##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65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송재봉·허성무·이재관

임호선 · 정진욱 · 이연희

황명선 · 김우영 · 이수진

이광희 · 임미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
·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지원정책 역시 수 도권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결과(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연구, 2024.7.)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2006년 평균 12.7%에서 2021년 23.8%로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평균

9.0%에서 16.1%로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산업분야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비수도권 기업 유치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각각 신설).

#### 법률 제 호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033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근로자(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지방기업이 소재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상담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br/>•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033호 첨단산업	법률 제20033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인재혁신 특별법
<u>&lt;신 설&gt;</u>	제22조의2(지방기업 및 지방근로
	자에 대한 조세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
	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
	다.
	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근로자(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지
	방기업이 소재하는 광역시·특
	<u></u> 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신 설>

주민등록을 하고 그 지역에 거 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 공 및 지도·상담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지방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